

아 동 수 당

아동수당은 가정에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분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청구수속은 출생 및 전입 후 15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한 달의 다음 달 수당부터 지급됩니다. 단, 출생일과 전 주소의 전출예정일 등(이하 ‘사실발생일’이라고 함)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청구일이 다음달이 되어도 사실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청구한 달의 수당부터 지급됩니다.

청구수속이 늦어지면 늦어진 달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

중학교 수료 전(만 15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

【지급액】

아동의 연령		지급액(1명당 월액)
만 3세 미만		15,000 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제 1·2 차	10,000 엔
	제 3 차 이후	15,000 엔
중학생		10,000 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특례급부로서 일률적으로 5,000 엔이 지급됩니다.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2 페이지 이후를 참조하십시오.

《 문의처·신청창구 》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아동수당 담당)

전화:(075)251-1123

우편번호 604-8171

교토시 나카교구 가라스마도오리 오이케 사가루 도라야초 566-1
이몬 메이지 야스다생명빌딩 3층(가라스마 오이케 사거리 남서모퉁이)

FAX : (075)251-1132(FAX 로는 신청불가)

<http://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117268.html>

교토시 어린이 가정지원과 분실에서는 우수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 아동수당 검색

※ 구청지소 보건복지센터 어린이육성실, 게이호쿠 출장소, 가미카와 출장소에서는 창구에서의 접수 및 일반적인 제도내용에 대한 문의만 대응합니다.



京都市
CITY OF KYOTO



● 대상자(수급자가 되시는 분)

교토시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부모나 미성년 후견인 등). 부모가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아동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분(주로 소득이 높은 분)이 수급자가 됩니다.

- ※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을 지정하면 그 분(부모가 지정한 분)에게 지급합니다.
- ※ 부모, 미성년 후견인 또는 부모 지정자 이외라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이 지급자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 ※ 부모가 이혼협의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시설 입소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중인 아동의 수당은 시설의 설치자 또는 양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 공무원인 분은 근무처에서 청구수속을 하십시오.

●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수료(만 15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월 31일)까지의 아동.

- ※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교토시 어린이 가정지원과 분실로 문의하십시오.

● 지급액

아동의 연령	아동수당 금액(1인당 월액)
만 3세 미만	일률적으로 15,000 엔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전	10,000 엔(제 3자 이후는 15,000 엔)
중학생	일률적으로 10,000 엔

-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이 아래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는 특례금부로서 일률적으로 월액 5,000 엔(아동 1명당)이 지급됩니다.
- ※ 아동수당제도상의 아동이란 만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첫 3월 31일을 맞이하기까지의 분으로 아동의 인원은 연장자부터 셉니다.

【지급액 예】

(소득제한 한도액 미만으로 3명의 아동을 양육하고 그 연령이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

- ① 만 16세, 만 14세, 만 11세
 만 14세는 중학생으로 10,000 엔
 만 11세는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 3자가 되어 15,000 엔 【월액 25,000 엔】
- ② 만 19세, 만 14세, 만 11세
 만 19세 아동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 11세는 초등학교 수료 전의 제 2자가 되어 10,000 엔 【월액 20,000 엔】

《소득제한 한도액표》

(단위 : 만엔)

부양친족등의 수	소득제한 한도액	급여수입 계산액	부양친족등의 수	소득제한 한도액	급여수입 계산액
0명	6 2 2.0	8 3 3.3	3명	7 3 6.0	9 6 0.0
1명	6 6 0.0	8 7 5.6	4명	7 7 4.0	1,0 0 2.1
2명	6 9 8.0	9 1 7.8	5명	8 1 2.0	1,0 4 2.1

- ※부양친족등의 수는 세법상의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친족(시설입소 또는 양부모 위탁중인 아동을 제외함) 및 전년 12월 31일에 수급자가 양육하고 있는 세법상의 부양친족이 아닌 아동의 인원이 됩니다.(올해 태어난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노인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친족이 있는 분의 한도액(소득액 기준)은 상기 금액에 해당 노인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 친족

1 명당 6 만엔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부양친족 등의 수가 6 명 이상인 경우의 한도액(소득액 기준)은 5 명을 초과한 1 명당 38 만엔(부양친족 등이 노인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노인부양친족일 때는 44 만엔)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의 해당 연도의 소득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액과 비교합니다. (공제액:일률공제(사회보험료 등 상당액) 8 만엔, 장애인 공제 27 만엔, 특별장애인 공제 40 만엔, 과부·홀아비 공제 27 만엔, 특별과부 공제 35 만엔, 근로학생 공제 27 만엔, 잡손공제, 의료비공제 및 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 공제는 공제상당액.)

● 수당지급을 받을 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 1). 원칙적으로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수당부터 지급합니다. 단, 사실발생일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구수속을 하면 사실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수속이 늦어지면 늦어진 달의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주요 사유	구비서류
아동이 태어났을 때	*인정청구서
수급자가 다른 시정촌에서 전입했을 때	*청구자명의의 보통예금(저금)통장 또는 현금카드의 사본
아동을 양육했을 때(수급자를 변경할 때)	*청구자의 건강보험증등 사본 (※ 2)
수급자가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청구자의 개인번호확인서류 *청구자의 신원확인서류

※ 1 청구에서 수속을 할 경우에는 인감(샤치하타도장 불가)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상황에 따라 상기 이외에도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청구자의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서는 연금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것은 인정청구서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인정청구서는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 각 구청, 지소, 계호쿠 출장소, 가미카와 출장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표지 참조)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청구수속시에 지정된 청구자 명의의 계좌에 원칙적으로 6 월, 10 월, 2 월에 각각 전달까지의 수당을 계좌이체합니다. 지급일은 10 일 전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급월	6 월	10 월	2 월
지급대상월	2~5 월분	6~9 월분	10~1 월분

※ 수급자격소멸 등의 경우는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황신청서 (매년 6 월)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매년 6 월에 현황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6 월 초순에 현황신청서와 첨부서류 안내서를 보내드리므로 6 월달 안에 제출하십시오.

제출이 늦어지면 수당 지급이 늦어집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6 월 이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시효

수당을 수급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2 년을 경과했을 때 시효가 되어 소멸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예) 현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10 월 10 일의 정기지급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일(10 월 10 일) 다음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가 됩니다.

● 수당지급이 끝날 때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는 수속이 필요합니다(※1). 수당지급은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로 종료됩니다.

수당의 지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수급받았을 경우에는 수급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므로 수속이 필요한 분은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유	구비서류
아동이 만 15세 도달일 이후 첫 3월 31일을 맞이했을 때	수속은 필요없습니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됐을 때(이혼, 구금 등)	• 수급사유소멸신청서 ※동 양식은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 각 구청, 지소, 계호쿠 출장소, 가미카와 출장소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표지참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2)	
수급자가 교토시외로 전출했을 때 (※ 3)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 1 청구에서 수속을 할 경우에는 인감(샤치하타도장 불가)이 필요합니다.

※ 2 지불해야 할 수당에 미지불이 있을 때는 아동에게 미지불분 수당을 지급하므로 미지불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새로이 수급자가 되는 양육자는 인정청구수속이 필요합니다.

※ 3 시외로 전출할 경우 계속하여 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출예정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전출처에서 수당 청구수속을 하십시오.

● 기타 수속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신속히 수속을 하십시오.

주요 사유	수속양식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이 늘었을 때(수당액이 증가할 때)	금액개정인정청구서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이 줄었을 때(수당액이 줄 때)	금액개정신청서	
수급자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분실, 구청 등에	수급사유소멸신청서
	근무처에	인정청구서
수급자가 공무원을 그만두었을 때	분실, 구청 등에	인정청구서
	근무처에	수급사유소멸신청서
수급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교토 시내에서의 주소변경)	변경신청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만 주소가 바뀌었을 때	계속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때	변경신청서, 신고서
	아동을 양육하지 않게 되었을 때	소멸신청서
수급자 또는 양육하는 아동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변경신청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때	변경신청서	
수급자, 배우자, 시외거주 아동의 마이넘버가 바뀌었을 때	개인번호변경등 제의서	

※ 수속에 따라 인감(샤치하타도장 불가), 청구자 명의의 보통예금(저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 청구자 본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공제조합원증, 연금가입증명서, 생계관계 기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정청구서, 별거감호 신고서, 개인번호변경 등의 신고서는 마이넘버(개인번호) 기입과 개인번호 확인서류와 신원확인서류를 제시(우송할 경우는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상세한 것은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로 문의하십시오.

※ 수속양식은 홈페이지(표지참조)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나포탈에 의한 전자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표지참조)를 확인하십시오.

<p>《기부신청》</p> <p>수급자는 차세대를 짊어질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본시에 신고함으로써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교토시 어린이가정지원과 분실로 문의하십시오.</p>
--